Mh.a.6

난민문제 및 인도적 구호활동

REFUGEE ISSUES AND EMERGENCY HUMANITARIAN ASSISTANCE

UNHCR Seminar on Refugee Issues
22-25 May 1995, Seoul

대 한 민 국 외 무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유 엔 난 민 고 등 판 무 관 실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난민문제 및 인도적 구호활동

외무부

난민문제 및 인도적 구호활동

REFUGEE ISSUES AND EMERGENCY HUMANITARIAN ASSISTANCE

UNHCR Seminar on Refugee Issues

22-25 May 1995, Seoul

대 한 민 국 외 무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유 엔 난 민 고 등 판 무 관 실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차 례

Ⅰ. 난민현황 ……3

Ⅱ. 난민발생 주요요인 ……4

Ⅲ. 난민보호 방법 ……5

Ⅳ. 효율적 난민구호활동 방안…… 14

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개요 …… 15

Ⅵ. UNHCR의 재정 …… 16

Ⅶ. 루안다 난민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민간단체별 지원현황 …… 18

Ⅷ. 난민관련 협약 가입 현황…… 19

Ⅸ. 기타 참고자료 …… 20

○ The Challenge of Protection …… 20

○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Their Significance …… 29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34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69

Ⅰ. 난민현황

1. 난민총수 (93. 12. 31)

○ 국제난민 : 2,300만명

○ 국내실향민 : 2,600만명

2. 연도별 난민총수

(단위 : 백만명)

연 도	총 수	연 도	총 수	연 도	총 수
1978	4.6	1984	10.5	1990	17.2
1979	5.7	1985	11.6	1991	17.8
1980	8.2	1986	12.4	1992	19.1
1981	9.8	1987	13.3	1993	23.0
1982	10.4	1988	14.8		
1983	10.9	1989	14.9		

3. 지역별 난민분포 현황

지 역	난 민 수
아 프 리 카	7,450,100
아 시 아	5,773,500
유 럽	6,056,600
중 남 미	130,900
북 미	1,290,800
오세아니아	50,400
구 소 련	2,280,700
계	23,033,000

Ⅱ. 난민발생 주요요인

1. 정치적 요인

○ 민족, 인종, 특정집단에의 소속, 종교 및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한 박해가 난민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
- 루안다,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베트남, 이라크내 쿠르드족 등

○ 과거에는 특정개인이나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로 소규모의 정치적 난민이 발생했었으나 근래에는 사회전반에 걸친 일상화 된 폭력으로 대규모 난민 발생

2. 경제적 요인

○ 빈곤이 난민발생의 주요 원인이 됨. 경제적 상황의 악화는 민족간 내지 국내 집단간 자원배분을 둘러싼 분쟁을 유발하기 쉬우며, 정치지도자는 경제적 상황악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집단 내지 소수민족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가 많음.

○ 내전, 무력분쟁 등으로 인한 농촌의 황폐화, 식량생산과 분배구조의 파괴, 의료시설의 파괴 등은 민간인들에게 전쟁 그 자체보다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수단 내전으로 사망한 약 60만명중 대부분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

3. 환경적 요인

○ 체르노빌 사건, 피나투보 화산 폭발사건과 같은 재해, 토지의 지속적 사막화, 산림의 황폐 같은 자연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난민 발생
- 아프리카에서 환경이 악화된 지역이 무력분쟁 및 기아의 대상지역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음.

4. 민족적 긴장

○ 냉전종식 이후, 민족분규로 인한 난민발생 급증
- 민족적 긴장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쉬우며, 소수민족의 경우 단일민족국가 건설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어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함.
  구유고지역의 "인종청소", 팔레스타인 지역 분쟁이 그 대표적 예임.

Ⅲ. 난민보호 방법

1. 난민에 대한 비호 (Asylum)

가. 현 황

○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걸쳐 비호요청자 (asylum applicant) 수 급증
- 주요 비호요청 대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26개국에 대한 비호 요청은 90년 55만 4천명, 91년 63만 9천명, 92년 83만 9천명임.

나. 비호에 대한 국제적 태도

○ 국제법은 난민비호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세계인권선언 (1948)은 모든 개인이 박해로부터의 비호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비호제공의무는 규정치 않고 있음.
- 난민협약 (1951)과 동 협약의정서 (1967)상의 당사국은 규정에 따라 비호를 제공토록 되어 있으나 비호 제공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비호 요청자수의 급증에 따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곤란에 처한 국가들이 비호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신체에 대한 위협, 식량부족 등의 위기에 처한 인근국 난민들에 대한 국경폐쇄, 이미 기입국한 난민의 강제송환 등의 조치가 점점 강화되고 있음.

- 1980년대 중반이후 유럽과 북미국가들은 난민정의의 축소, 난민지위 결정절차의 강화, 난민자격 신청제한 등을 실시해 왔으며, 오스트리아,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이 최근 난민관련 국내법을 강화하였음.
-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불경기와 겹쳐 각국의 난민에 대한 대우가 날로 악화되고 있음. 1979년 유럽의 실업인구는 9백만이었으나 93년에는 17백만명에 이름.

다. 제3국 정착 (Resettlement)

○ 난민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간주되는 제3국 정착은 난민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평가되나, 제3국 정착 인구는 매우 적음.
- 92년 난민 19백만명중 재정착 인구는 34,000명 정도임.
- 주요 재정착국은 호주, 카나다,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임.

2. 분쟁지역에서의 난민보호

가. 분쟁과 난민

○ 전쟁을 피해 거주지를 떠나온 사람은 1951년 난민협약에 의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난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오늘날 난민발생의 주요 원인이 전쟁으로 인한 거주지 파괴, 식량부족 등임.
- 지역협약, 각국 관행 등은 상기 난민들에게 일정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거주지를 떠난 사람들의 생활이 더욱 비참함.
- UNHCR을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들이 실향민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펴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국제적 장치가 없어 어려움이 많음.

○ 분쟁지역내 거주하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왔음.
- 분쟁지역내 민간인 보호활동은 중립성, 공평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함.

○ 분쟁은 난민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난민구호활동의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음.
- 분쟁 당사자들은 인도적 구호활동 조차도 그들의 활동에 대한 방해 내지 외부개입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 분쟁지역내에서의 보호 및 구호활동은 해당지역에서 중앙정부의 부재로 인한 질서와해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예 : 소말리아)

나. 난민과 국제안보

○ 난민이 언제나 분쟁의 희생자인 것만은 아니며, 종종 그들이 전투를 지원하거나 전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
- 캄보디아 게릴라들이 근거지를 태국내 난민캠프에 둔 점, 아프간 전사들이 파키스탄내 난민촌에 자신들의 거점을 마련했던 것들이 대표적 예임.
- UNHCR은 무장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보호 제공을 거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난민전사 (refugee warriors)"들의 존재는 때때로 군사적 대립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 난민캠프가 군사거점으로 직접 활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식량공급, 부상병들에 대한 치료와 휴식처 제공 등 간접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음.

○ 무력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문제의 첫번째 해결책은 전쟁의 종결임. 그러나 인도적 구호활동이 때때로 분쟁속에 휘말려 들거나 분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경우도 있음.
- 일반국민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구호를 받는 동안 군대는 싸움을 계속할 수 있으며, 또한 구호물자가 군대지원물자로 변하는 경우도 있음.
- 인도적 구호활동은 단기적 도움일 뿐이며, 때로 장기적으로는 수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다. 국가주권과 개입

○ 전쟁으로 인해 거주지를 떠난 난민의 인도적 구호활동에 대한 국가주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국제사회의 입장은 양분되어 있음.
- 주권은 모든 국제관계의 원칙을 능가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인도적 원칙에 입각하여 국제사회는 개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음.

○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를 위한 과제(Agenda for Peace)에서 국가의 주권과 통일성은 국제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 사안이며 주권이 전지 전능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밝힘.

○ 오늘날 분쟁지역내 국제적 보호는 해당국 영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국측의 협력 내지 최소한 동의가 있을 경우 훨씬 구호활동 수행이 용이함.
- 반면, "인도주의적 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은 일국이 타국 영역내에서 해당국 동의없이도 독자적 내지 집단적으로 구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포함하는 개념임.

○ 구호단체가 구호활동 수행을 위해 내전지역내 파벌, 유사정부 등과 협의 하더라도 이는 동 상대자를 정부로 승인 (recognition)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최근 주권의 해석은 그 형태뿐만 아니라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
즉 국가주권은 자국민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책임과 국제공동체의 구호활동 수행을 허용할 책임을 지닌다는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주권과 국제구호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이게 됨.
- 주권의 권리와 책임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함께 논의되어야 함.

라. 구호활동 종사자 보호

○ 치안불안이 구호활동 수행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예를 들면, 92년 한해동안 사라예보시의 공중 구호품 수송은 3회에 걸쳐 총 8주간 중단되었으며 93년 상반기에는 7회에 걸쳐 총 5주간 중단되었음.
- 92년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던 UNHCR, UNRWA 등 국제기구 소속 구호 요원 13명이 사망하였으며, 93년 1-4월간 12명이 사망하였음.

○ 구호품과 구호요원 보호를 위한 무력의 사용이 현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 구호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군인 및 군장비 참여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동 참여가 구호활동의 비정치적 성격을 희석시키고 오히려 분쟁을 격화시키며 구호장비와 구호인원에 대한 공격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
- 한편 옹호론자들은 긴급성이 요구되는 구호활동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

○ 인도적 구호활동 종사자들은 UN의 PKO 활동에 따른 군사적 보호를 받고 있음.
- 92.9. 안전보장이사회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지역에서의 UNPROFOR의 임무에 인도적 구호활동 보호를 포함

3. 난민귀환사업 (Repatriation)

가. 난민귀환 현황

○ 난민의 국적국 이외 국가의 정착이 어려운 현실에서 난민의 자발적 귀환이 난민문제 해결의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음.

○ 93년 UNHCR의 지원을 받아 귀환한 난민수는 약 180만명에 이름.

(단위 : 천명)

귀 환 국	귀환인구	귀 환 국	귀환인구
아프가니스탄	747.6	소말리아	57.6
모잠비크	431.6	타지키스탄	39.0
이 라 크	239.8	미 얀 마	35.0
캄보디아	131.9	앙 골 라	16.6
이디오피아	62.9	베 트 남	14.1
계		1,776.1	

○ 93년 1월 UNHCR은 멕시코로부터 과테말라 난민 50,000의 귀환 지원, 4월 365,000명의 캄보디아 난민 귀환 지원, 6월 130만명의 모잠비크 난민 귀환 지원

- 정치적 긴장완화와 다수 내전의 화해조짐으로 대규모의 자발적 난민귀환이 이루어짐.

○ 몇몇 국가에서는 난민 귀환이 평화정착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평화정착 과정의 필수요소가 되기도 함.

-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의 경우 자국민들의 귀환이 내전을 종식시킬 정치적 해결의 열쇠가 되고 있으며, 태국내 캄보디아 난민의 경우 93년 5월 실시된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 다수가 본국으로 귀환하였음.

○ 오늘날 난민귀환이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귀환중인 난민보호문제가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으며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는 난민이 귀향을 위해 거주국 국경을 넘은 경우에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받아 들여지고 있음.

○ UNHCR은 "안전한 상황에서 자발적 귀환"을 기준척도로 하여 거주국과 귀환국간의 협력, 조직화 된 관행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난민 자신은 개인적 기준에 따라 개인적 귀환을 결정하기도 함.

나. 난민귀환의 원칙

○ 조직화된 귀환

- UNHCR은 난민귀환이 평화조성, 평화유지, 정치적 화해 및 경제적 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조직화된 난민귀환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난민귀환은 난민들의 협의기구와 거주국 및 귀환국 정부간 협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동 협정은 대개 아래 사항을 포함함.
  . 자발적, 집단적 귀환 및 조직화된 형태와 안전속에서의 귀환
  . 귀환국 정부는 난민의 기본권 보장
  . 귀환자들은 귀환후 3년간 군복무 및 지역자위병 소집 면제

  . 귀환은 반드시 UNHCR에 의해 수행
  . 귀환자와 그 대표는 귀환국내에서 이동의 자유 향유
  . 생명권 및 공동체의 통일성 인정
  . 귀환자의 토지소유 가능
  . 협정의 조건에 대한 국제적 증재, 모니터링 및 평가 허용

○ 자발적 귀환

- 귀환난민의 절대다수는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경우이나 자발적 귀환은 난민보호 관련 기구들에게 딜렘마를 안겨주고 있음. 난민보호기구들이 판단하기에 불안정한 (unsafe) 상황에서의 귀환은 허락할 수 없는 입장임과 동시에 난민의 귀환권 (right to return)을 도와야 할 책임을 짐.

다. 난민귀환의 문제점

○ 대다수 귀환난민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땅에 돌아가는 것인 바, 귀환후에는 굶주림, 질병 등에 봉착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구호책 필요

○ 난민귀환 지원과 난민이 귀환하려는 지역의 발전 필요성 사이에는 커다란 갭이 있음.

- 자발적 귀환이 난민문제 해결책으로서의 영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귀환 지역의 개발이라는 장기적 요구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이 아울러 마련되어야 함.
- 귀환지역의 발전이 수반되지 않는 난민귀환은 또다시 빈곤으로 인한 내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UNHCR은 개발기구가 아니며 개발기구들도 난민귀환지역에 우선권을 주기는 어려운 실정임.

- 난민귀환 지원과 아울러 해당지역 개발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함.

○ 난민귀환사업은 이밖에도 귀환난민의 토지, 주택의 재분배문제 및 귀환난민의 해당국 국민으로서의 재통합 (reintegration) 문제 등이 있음.

○ UNHCR이 니카라과 난민귀환사업시 시행한 Quick Impact Project (QIP)는 분쟁과 경제적 쇠락으로 황폐해진 국가들의 재통합 프로그램으로 모델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음.

- UNHCR은 2년간 12백만불을 투입, 학교, 보건소,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 자본의 보수 및 재건설, 가축, 종자제공을 통한 농업증진, 도시와 농촌에서 소규모 자영업 육성 등을 시행

라. 난민귀환의 장애

○ 난민귀환의 가장 심각한 장애는 지속적 폭력과 박해임.

- 귀환한 난민이 체포, 투옥되거나, 다시 타국으로 피신하는 경우 발생

○ 귀환국과 난민기구간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난민귀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예 : 에리트리아) 및 귀환국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귀환 난민을 거절하는 경우 (예 : 루안다)도 있음.

4. 난민 예방 (Prevention)

가. 난민예방의 의의

○ 달성되기만 한다면 난민예방은 난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

- 내전, 빈곤 등으로 난민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국제사회가 초기에 효과적 조치를 취함으로서 난민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

나. 조기경보, 모니터링 및 보고

○ 예방의 성공여부는 급박한 거주지 이동에 대한 효율적인 조기경보에 달려 있음.

- 조기경보는 잠재적 난민발생지역으로부터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달려 있음.

○ 조기경보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현상으로는 인권침해, 정치적 긴장, 무국적자의 증가 등이 있음.

○ 문제를 예상하는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은 직접 모니터링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위기상황이 이미 발생하여 진행중일때 가동되고, 위기상황 발생이전에는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음.

다. 예방활동 (Prevention Action)

○ 예방행동이란 인권존중, 소수민족 보호, 국제인도법 존중 등을 고양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직접교섭과 협상을 포괄하는 개념임.

- 유엔특사 및 고위관리들이 종종 직접교섭을 주도하기도 함. (예 : 구유고지역)
- 인도적 구호활동 그 자체가 예방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Ⅳ. 효율적 난민구호활동 방안

1.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노력은 난민의 복지와 안전보장에 결정적 요인임.

○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노력은 기본적으로 상이한 출발점에서 시작됨. 정치적 협상이 국가의 이익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에 비해 인도적 지원은 개인의 필요를 우선시함.

2.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은 난민발생의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며, 난민보호는 난민발생국, 비호국, UNHCR 공여국, 국제기구 및 NGO들간 종합적 대응책을 필요로 함.

○ 개발원조 외에 외교정책, 국제법, 경제협력, 이민 및 망명정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함.

3. 과거 난민보호는 주로 자국에 피해온 난민에 대한 망명권 (right to asylum) 이었으나 오늘날은 그 논의범위가 훨씬 확대되어, 난민의 망명권 외에 귀환권 보호 및 지원, 자국영역내에서 거주지를 상실한 난민에 대한 보호 등이 논의되고 있음.

Ⅴ.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 개요

1. 연 혁

○ 1949. 총회결의 319호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UNHCR)직 설치 결정
  - 원래 한시적 성격의 기구였으나 현재는 매 5년마다 총회에서 임기를 연장

○ 1951.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Office of UNHCR) 설치

2. 기 능

○ 인도주의에 입각, 난민에 대한 법적, 물질적 구호사업 담당

○ 난민의 귀환, 재정착, 가족 재결합 사업 지원

○ 난민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도모

3. 임 명

○ 유엔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선출
  - 현 Sadako Ogata 고등판무관은 94-98년간 임기 연장

4. 조 직

○ UNHCR실에는 총 4,800명의 직원 근무 (94.11.현재)
  - 850명은 제네바 소재 UNHCR 본부에, 나머지는 113개국 소재 200개 지역 사무소 (field office)에서 근무

○ 집행이사회 (Executive Board)
  - 난민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진 47개국으로 구성되며 UNHCR의 사업계획 심의 및 활동예산 승인

Ⅵ. UNHCR의 재정 (1994)

1. 총 소요예산 : 1,271.8 (단위 : 백만불)

가. General Programs : 418.5

나. Special Programs : 853.3

○ 아프리카

- Burundi/Rwanda Emergency : 258.2
- Horn of Africa : 56.6
- Kenya Cross-Border : 14.5
- Liberia Repatriation : 8.0
- Mozambique Repatriation : 79.8

○ 아 시 아

-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 74.4
- Myanmar Repatriation : 15.7
- Sri Lanka Repatriation : 8.1

○ 서남.중앙아시아

- Afghanistan Repatriation : 30.7
- Tajikistan : 14.9

○ 중 남 미

- Guatemala Repatriation : 11.9
- Other Programmes : 9.1

○ 유 럽

- Azerbaijan : 8.5
- Georgia : 7.4
- ex-Yugoslavia : 252.0

○ 난민교육 : 3.5

2. 확보 기여금 총액 (94.10.현재) : 884.2

가. General Programs : 308.8

나. Special Programs : 575.4

3. 국가별/단체별 기여금 지원내역

○ 주요 공여국		
	1) 미 국	239,500,249
	2) E C	149,926,114
	3) 일 본	91,067,690
	4) 스 웨 덴	80,486,600
	5) 영 국	65,459,102
	6) 네덜란드	42,821,623
	7) 노르웨이	31,583,302
	8) 덴 마 크	28,316,583
	9) 카 나 다	22,154,756
	10) 스 위 스	18,031,334
	11) 독 일	16,420,322
	12) 이 태 리	16,164,918
	13) 프 랑 스	10,502,640
	14) 호 주	10,334,477
	15) 핀 란 드	8,663,013
	16) 아일랜드	3,024,952
	17) 벨 기 에	2,154,327
	18) 스 페 인	1,869,096
	19) 오 지 리	1,237,952
	20) 터 키	880,000
	21) 러 시 아	602,000
	22) 한 국	592,000
○ 기타 국가 및 정부기구		3,309,159
○ 유엔기구		17,433,000
○ N G O		21,672,030
계		884,177,239

4. 우리나라의 연도별 기여금 지원내역

연 도	지원액 (불)	비 율	연 도	지원액 (불)	비 율
1981	30,000	0.00%	1988	20,000	0.00%
1982	10,000	0.00%	1989	40,000	0.00%
1983	10,000	0.00%	1990	20,000	0.00%
1984	30,000	0.00%	1991	35,000	0.00%
1985	10,000	0.00%	1992	70,000	0.00%
1986	9,333	0.00%	1993	144,064	0.01%
1987	15,000	0.00%	1994.10.	592,000	0.07%

Ⅶ. 루안다 난민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민간단체별 지원현황

(94.11.22. 현재)

단 체	현금지원		구호품		의료진 파견	
	기지원	예 정	기지원	예 정	기지원	예 정
유엔한국협회	약10만불					
대한적십자사	5.5만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10만불					
한국선명회	10만불	37.5만불 이상				
한국기아대책기구			5.3만불	10만불	22명	
한국이웃사랑회	23만불	8만불	7.6만불		19명	16명
한국걸스카우트	1만불					
소 계	59.5만불	45.5만불	12.9만불	10만불	41명	16명
총 계	127.9만불의 물적지원과 57명의 의료진 파견					

Ⅷ. 난민관련 협약 가입현황 (94.8.현재)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 123개국 (우리나라 92.12. 가입)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 123개국 (우리나라 92.12. 가입)

Introduction

The Challenge of Protection

Refugees are the symptom of the ills of an age. The state of the world's refugees in 1993 shows the monumental challenges that need to be met before this decade can hope to earn a clean bill of health. As the year began, the number of people forced to leave their countries for fear of persecution and violence had risen to a total of 18.2 million.[1] To reach that painful sum, an average of nearly 10,000 people a day became refugees – every single day throughout the previous year.

Nearly four million people from the former Yugoslavia have come to depend on international emergency assistance since late 1991, as the term "ethnic cleansing" has joined the 20th century's lexicon of horrors. Fully one-tenth of Somalia's entire population is outside its borders, and is being helped to survive by international aid. Well over half a million Liberians have been in a similar situation since early 1990. New upheavals continue to drive out new victims: by June 1993, more than 280,000 people had fled from political repression in Togo, some 500,000 from the war between Armenia and Azerbaijan, 60,000 from clan-based struggles for power in Tajikistan and up to 100,000 from ethnic strife in Bhutan.

Refugees, by definition, are people who have left their countries. Many people who flee from violence and persecution do not become refugees for the sole reason that they do not – and in many cases cannot – cross an international border. Yet the needs, and the numbers, of the internally displaced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refugees. At a conservative estimate, some 24 million people are displaced within the borders of their own countries.[2] Adding their numbers to those of refugees means that, in a world population of 5.5 billion, roughly one in every 130 people on earth has been forced into flight.

The state of the world's refugees in 1993 is not one of unbroken gloom. Some of the conflicts that generated displacement within and across borders have subsided to the point where uprooted people feel able to go home. About 2.4 million refugees did so in 1992 alone. Returnees now far outnumber the remaining refugees in Central America. The last remaining refugee camp on the Thai border with Cambodia closed

in April as its former residents went home in time to take part in the national elections in May. By mid-1993, over 1.6 million Afghan refugees had returned home from Pakistan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despite very uncertain conditions in their native land; the total was expected to pass the two million mark well before the end of the year. And the repatriation of 1.3 million Mozambicans, the largest organized repatriation ever attempted in Africa, got under way in July. Meanwhile other solutions continue to be found for refugees unable to repatriate. Significant – if much smaller – numbers have been able either to integrate permanently in the countries where they first sought asylum or to resettle in third countries where they have begun new lives.

"The number of refugees continues, relentlessly, to grow"

The total number of refugees continues, relentlessly, to grow.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or meeting the needs of these people, which includes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is being stretched to cover the new demands of larger and more complex refugee problems. It has at its core a simple but powerful commitment: refugees must be protected, and helped towards a lasting solution to their plight.

Today, the problems of refugees raise not only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concerns but also fundamental issues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is report will examine the challenge of protection amid the dynamics of changing political realities.

New realities

Wars, persecution and intolerance are ancient themes in the human drama, and refugees are perennial characters. If there is a dreadful sameness in the fact that people are still being forced to flee, there have been changes in almost every aspect of the framework in which their stories unfold. The problems of refugees have not changed, but the refugee problem has. Policy is being set against the background of radical geopolitical shifts, the enormous growth in refugee numbers, the prevalence of refugee emergencies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and the shrinking opportunities for permanent large-scale integration in countries of asylum.

At the start of the 1990s, optimists foresaw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refugees around the globe. Several long-standing armed conflicts had declined in intensity, apparently opening the way for the repatriation of millions of displaced people. But as the decade draws on, the euphoria that greeted the end of the Cold War has given way to a sober reassessment of how refugees are affected by the new geopolitical realities.

The reduction of East-West tensions has created new possibilit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settlement of disputes. But the proxy wars of the previous decades have proved to have lives of their own after their patrons withdrew, leaving devastating armouries behind in the hands of rival factions. Many of the recently independent states that arose from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are experiencing violent clashes based on ethnicity, ideology or simple struggles for power. A number of stat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have fragmented or imploded. In every region that is subject to these new or persisting forms of instability, people have fled their homes to escape persecution and violence. The same reduction of tensions that allowed recent conflicts to escape becoming Cold-War battlegrounds also meant that they – and their victims – could be neglected in the highest councils of international politics, especially when the perceived interests of influential powers were not at stake.

In 1978 there were only 4.6 million refugees look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assistance and protection. The quadrupling of that number is placing serious strains on a system of protection that was conceived as temporary and

finite. When UNHCR was set up in 1951, it had a projected life span of three years. It was assumed that the existing post-World War II refugees would be integrated into the societies in which they had found refuge, and that the organization could then be disbanded.

Local integration and third-country resettlement on the scale that would be needed to meet today's mass displacements are not realistic options. Permanent integration in countries of asylum has, in practice, only been available to a fraction of the displaced from the 1960s onwards. The vast majority of refugees sought and found sanctuary in neighbouring countries in the Third World, and returned home when conditions permitted.

As the total number of refugees continues to grow, temporary protection followed by voluntary repatriation is now seen as the most practical and, in the majority of cases, the most satisfactory means of protecting many of today's refugees, the great majority of whom are fleeing from armed conflict.

A policy of offering temporary protection, however, implies an active responsibility to pursue improved conditions in the country o origin, thereby allowing refugees to return voluntarily and in reasonable safety. Action on behalf of refugees is, therefore, becoming more closely tied to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efforts in their home countries. At the same time, stat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re being compelled to address themselves to the causes of flight *before* it occurs. A new emphasis on prevention supplemen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arlier commitment to protect people and try to solve their problems *after* they have become refugees.

Fig. A
Global Numbers of Refugees: 1960 –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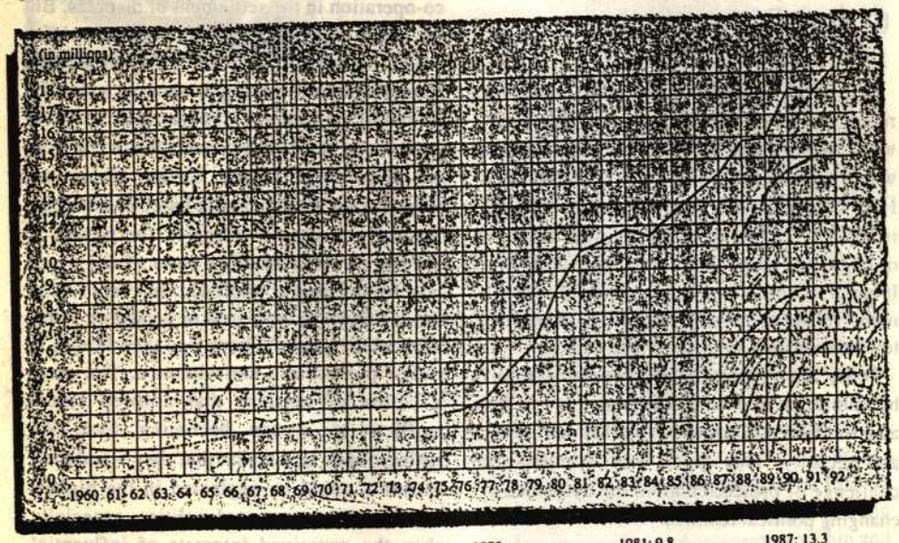

1960: 1.4
1961: 1.3
1962: 1.3
1963: 1.3
1964: —
1965: —
1966: —
1967: —
1968: —
1969: —
1970: 2.5
1971: —
1972: —
1973: —
1974: 2.4
1975: —
1976: 2.8
1977: 3.3
1978: 4.6
1979: 5.7
1980: 8.2
1981: 9.8
1982: 10.4
1983: 10.9
1984: 10.5
1985: 11.6
1986: 12.4
1987: 13.3
1988: 14.8
1989: 14.9
1990: 17.2
1991: 17.0
1992: 18.2

Note: Totals are as of 31 December of each given year. Figures for the years 1964-69, 1971-73 and 1975 are incomplete, and are represented by a broken line. The total for 31 December 1992 does not include some 810,000 internally displaced people in Bosnia and Herzegovina. For a detailed breakdown of the totals for 1991 and 1992, see Annex I.1.

The meaning of protection

What sets refugees apart from other people in need of humanitarian aid is their need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Most people can look to their own governments and state institutions to protect their rights and physical security, even if imperfectly. Refugees cannot. In many cases they are fleeing in terror from abuses perpetrated by the state. In other instances they are escaping from oppression that the state is powerless to prevent because it has lost control of territory or otherwise ceased to function in an effective way.

The protection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tends to refugees recognizes the specific needs of people who have good reason to fear that their own governments will not or cannot provide safeguards against abuse. It provides a temporary substitute for the normal safeguards until the refugee can again benefit from national protection – either by returning voluntarily to his or her original country of nationality, or by assuming a new nationality. Until a solution of this sort is found, international protection also means that countries of asylum will not discriminate against refugees, allowing them at least the same civil and economic rights that are enjoyed by other legal immigrants.

The core of international protection is the principle that people should not be forced to return against their will to a country in which their lives or freedom would be endangered because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The legal term for this guarantee is *non-refoulement*. It can only be implemented through co-operation with governments at the political level, although extending protection according to the term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remains a non-political, humanitarian act. A state can offer refuge without being seen to pass judgment on the country of origin. During the Cold War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refugee status were often highly politicized, and they remain so in some instances today. In principle, however, international protection is conceived as a response to the needs of the refugee rather than to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country of asylum.

"Refugees must not be forced to return to a country where their lives or freedom could be in danger"

Protection must include physical security of refugees. There are two dimensions of physical protection. One is personal security from physical attack whether from armed forces, death squads, or lone assassins. Physical protection also means keeping people alive through humanitarian assistance. Food, water, sanitation and medical care are fundamental to survival. As more and more refugee crises erupt in the midst of armed conflict, the physical aspects of protection have assumed a compelling urgency.

The essential element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then, are admission to safety, exemption from forcible return, non-discrimination, and assistance for survival. With growing numbers of people in need of protection, these principles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The increasingly volatile international context requires innovative strategies for implementing the traditional principles and extending them to cover new kinds of challenges.

Emerging issues in protection

The refugee problem is reaching critical proportions in almost all parts of the world, placing the structures and institution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under stress. The needs of refugees are too often seen as being at odds both with the interests of states and with political pragmatism. Many of the people in need of protection are fleeing from armed conflict, generalized violence, severe disruptions of public order or widespread abuses of human rights. Their

claims to international protection are widely acknowledged, even though they may not always conform to the notion of persecution found in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ee Box 2). The situations from which they flee do not necessarily entail individually targeted persecution but do provide fertile breeding grounds for it.

New claims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assert themselves in great numbers even as many old ones persist. The intermingling of refugees with economically motivated migrants complicates the effort to protect those who have a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Asylum countries must struggle with the pressing economic and political demands of their own populations, while fulfill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that at present seem much more likely to grow than to diminish.

These pressures on the established system of protection make it imperative to take advantage of the new possibilit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difficult task under way is to preserve the principles of protection while devising new approaches that balance humanitarian needs and political realities.

"Traditionally, international protection was only seen to be necessary after a refugee had crossed a border"

The process of becoming a refugee is not instantaneous. It proceeds through the often slow growth of root causes to the sometimes quite sudden flash of an immediate catalyst that generates actual flight. Asylum follows when another state grants those in flight access to its territory and extends protection to them. Finally, for the more fortunate, a permanent resolution of their status is sought and found, and they cease to be refugees.

Traditionally, the need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was seen to arise only after a refugee had crossed a border and ceased to apply when a solution was found. Today, that truncated approach is seen to be inadequate. An effective strategy needs to address the entire continuum of refugee flows from causes through to emergency response, protection and eventual solution. A comprehensive policy must, therefore, be one that seeks to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conditions to the point where people are forced to flee. It must meet their needs for protection and assistance in flight and in asylum. It must also promote the resolution of problems and contribute to the safety and welfare of the refugees in the early stages of repatriation or settlement.

New issues have emerged from the changed circumstances and perceptions of the 1990s. They call for fresh strategies to meet the need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The chapters that follow in this report examine these emerging issues in depth. Seven of the most salient are highlighted here.

1. The climate of receptivity for refugees has cooled in many asylum countries. Economic difficulties, domestic political instability, the resurgence of ethnic tensions and the rolling up of the West's ideological welcome mat for refugees from communist countries are among the explanations for the less hospitable climate facing refugees. There is also a more general sense of weariness at the apparent intractability of refugee problems. In virtually all regions, the persistent growth in numbers of actual and potential refugees has prompted a more conservative approach. The authorities in many industrialized countries are increasingly inclined to interpret their obligations to refugees according to a narrow "persecution standard" and to apply a restrictive definition of what constitutes persecution. Part of the reason is that the asylum practices of the Cold-War period tended, in the West, to equate the grant of asylum with permanent settlement. Fewer asylum countries remain willing to accept what they see as an unlimited obligation to people fleeing violence.

2. Refugees are part of a complex stream of migration. The movement of refugees in search of safety takes place against a background of much larger migratory movements which engender unease among many people and xenophobic or racist reactions in a few. In many settings, refugees mingle with people who move not out of fear for their lives and freedom but in search of better opportunities or to escape from poverty. There is widespread anxiety in some countries that the special provisions made for the protection of refugees are being abused by people who have no valid claim to refugee status, and this is undermining support for generous provision of asylum in a number of recipient countries.

3. Refugees are often interspersed with other people who need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humanitarian emergencies that more and more often accompany political upheaval and armed conflict, refugees mingle with internally displaced people, victims of mass expulsion, returnees, demobilized soldiers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local people caught up in the same turmoil. Dealing with mixed populations of refugees and non-refugees poses serious practical difficulties as well as questions of principle. Does it make sense to ignore the humanitarian needs of non-refugees living in proximity to recognized refugees – for example, a local population severely affected by drought in a region where resources are further strained by an influx of refugees? Humanitarian agencies have been called upon to reach beyond their mandates in a number of situations where both categories face the same dire need for material help. Yet it remains essential not to lose sight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ose who require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those who need only relief.

4. Humanitarian assistance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aspect of protection. The majority of today's refugees come from and find refuge in som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The combination of large numbers, remote and fragile environments, violence and extreme poverty can make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both difficult and extremely urgent. With one refugee emergency following hard on the heels of another throughout the early 1990s, the capac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ount adequate responses has been strained to breaking point. At the same time, valuable experience has been accumulated, and there is a new awareness of the need to address long-neglected problems. For example, women far outnumber men in most refugee populations, yet only recently has serious consideration been given to the ways in which their needs for both protection and assistance differ from those of men. The way in which assistance is provided can have an impact not only on the immediate safety and welfare of the refugees but also on the prospects for a durable solution.

5. Voluntary repatriation is occurring with growing frequency in conditions of continuing conflict and insecurity. Voluntary repatriation was traditionally thought of as the last stage in the process of return to normality, and usually took place after peace and stability had been restored to a country. Today's large-scale returns tend to occur in the midst of this process, and refugees themselves play an important role in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Negotiations on the terms of repatriation are often an important early step in establishing contact between opposing parties to a conflict. The transition to stable government may depend on returning refugees being able to take part in elections or referenda on the form of government or its leadership. Repatriation in an unstable setting poses considerable risks for refugees, but they often make the decision to return despite the dangers that confront them.

6. The refugee problem is essentially a human rights problem. The right to seek and attain asylum is fundamental, but so is the right to live in peace and safety in one's own homeland. An actual or anticipated violation of rights is the direct reason for the departure of countless refugees. A pattern of violations is implicated in many of the conflicts that impel others to leave

Fig. B.1
AFRICA: Number of Refugees, 1980-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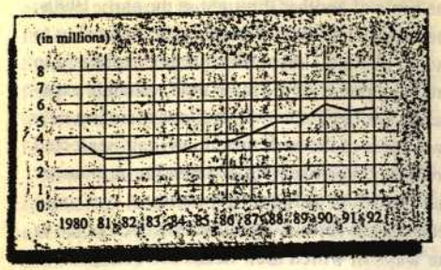

	1981: 2.7	1984: 3.0	1987: 4.0	1990: 5.6
	1982: 2.7	1985: 3.5	1988: 4.6	1991: 5.3
1980: 3.7	1983: 2.9	1986: 3.5	1989: 4.6	1992: 5.4

Fig. B.2
ASIA: Number of Refugees, 1980-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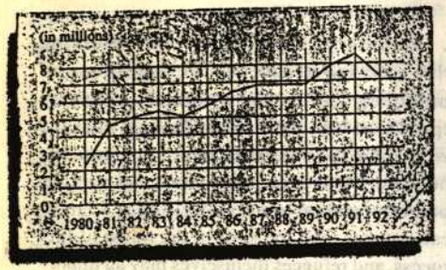

	1981: 4.6	1984: 5.1	1987: 6.8	1990: 7.9
	1982: 5.1	1985: 5.7	1988: 6.8	1991: 8.6
1980: 2.3	1983: 5.4	1986: 6.4	1989: 6.8	1992: 7.2

Fig. B.3
***EUROPE: Number of Refugees, 1980-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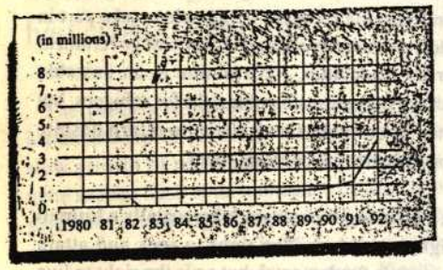

	1981: 0.6	1984: 0.7	1987: 0.7	1990: 0.9
	1982: 0.6	1985: 0.7	1988: 0.7	1991: 1.2
1980: 0.6	1983: 0.6	1986: 0.7	1989: 0.8	1992: 3.6

*The total for 31 December 1992 does not include some 810,000 internally displaced people in Bosnia and Herzegovina.

Note: See Annex I.1 for breakdown of regions by country

their homes. Safeguarding human rights is necessary to prevent conditions that force people to become refugees, and is a key element in protecting them. Improved observance of human rights standards is often of critical importance for the solution of refugee problems.

7. Prevention is preferable to cur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protection, this does not mean erecting obstacles to refugee movements, which would constitute a denial of protection. Rather, it means addressing both the root and the immediate causes of flight. At the most fundamental level, prevention is not specific to refugees; it lies in the larger realms of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 respect for human rights, economic development, stable participatory government, a fair and independent judiciary and tolerance for diversity. Societies in which no one has cause to fear persecution or generalized violence do not produce refugees. The root causes of refugee flows are often very complex and difficult to identify precisely. The immediate causes may, however, be susceptible to more direct preventive strategies, including diplomacy, information campaigns and provision of training and advice on matters such as nationality law and communal relations.

Prevention should aim at arresting and rolling back the deterioration of conditions in a country that is, or seems to be, on the verge of producing refugees, so that people feel secure enough to remain in or near their homes. Preventive efforts should also seek both to persuade and assist the authorities in such countries to meet their obligations to protect the rights and security of their people to the best of their capacities – and should support them in strengthening those capacities in every way possible.

State responsibility

The new emphasis on prevention necessarily throws the spotlight on the conditions and events that force people to flee. Such attention was conspicuous by its absence in the first three decades after World War II, an omission that in

part reflected the political paralysis of a bi-polar world. In the receiving countries of the West, anyone arriving from the Soviet Union or one of its allies was automatically granted some form of asylum; no detailed scrutiny of their reasons for leaving was felt necessary. In the Third World, too, it was almost impossible to address the causes of flight if the source country could call on the protection of one of the superpowers – and almost all could to some degree. In the system of refugee protection, the country of origin was shielded from scrutiny by the privileges of national sovereignty.

Refugee policy was thus limited to dealing with the manifestations of the problem, since the causes were beyond the reach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approaches developed in this period concentrated exclusively on the roles and obligations of countries of asylum. In the 1951 Convention, no specific reference was made to the responsibilities of countries of origin.

The preventive approaches being developed today are based on notions of state responsibility. Countries of origin are being called upon to eradicate the causes of flight and to facilitate return. This is in keeping with a growing tendenc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ncern itself with conditions that until recently would have been treated as internal matters: violations of human rights, repression of minorities, indiscriminate violence and persecution. Such conditions can no longer be seen as falling exclusively within the realm of domestic concern especially when they affect other countries by causing an outpouring of refugees. Efforts are being made to draw refugee-producing countries into a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imed at preventing, halting and reversing the conditions that cause people to flee.

The focu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has broadened gradually. The shift makes itself felt in an emerging emphasis, alongside the right to seek and to enjoy asylum, on the right not to be unjustly compelled to leave home. There is, in the idea of a "right to remain", a strong presumption against expulsion, denationalization, exile and denial of

Fig. B.4
LATIN AMERICA: Number of Refugees, 1980-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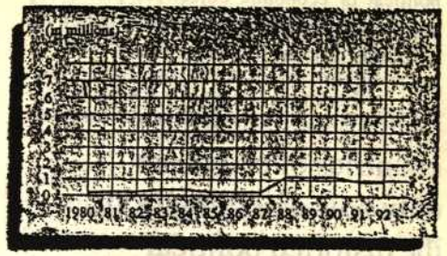

	1981: 0.3	1984: 0.4	1987: 0.3	1990: 1.2
	1982: 0.3	1985: 0.3	1988: 1.2	1991: 0.9
1980: 0.2	1983: 0.4	1986: 0.3	1989: 1.2	1992: 0.9

Fig. B.5
NORTH AMERICA: Number of Refugees, 1980-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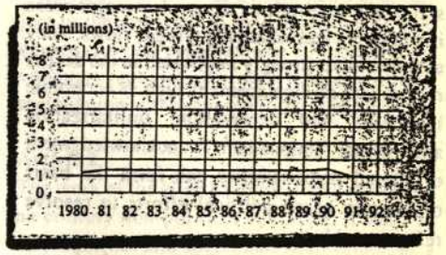

	1981: 1.4	1984: 1.4	1987: 1.4	1990: 1.5
	1982: 1.4	1985: 1.4	1988: 1.4	1991: 1.0
1980: 1.2	1983: 1.4	1986: 1.4	1989: 1.4	1992: 1.0

Fig. B.6
OCEANIA: Number of Refugees, 1980-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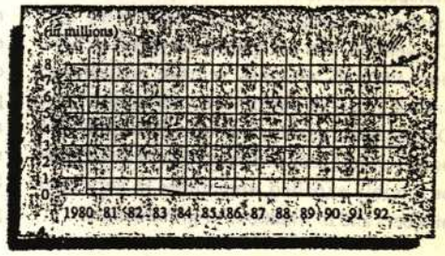

	1981: 0.3	1984: 0.1	1987: 0.1	1990: 0.1
	1982: 0.3	1985: 0.1	1988: 0.1	1991: 0.1
1980: 0.3	1983: 0.3	1986: 0.1	1989: 0.1	1992: 0.1

Note: See Annex I.1 for breakdown of regions by country

return – and even against ways of pursuing political or economic objectives that cause masses of people to fear so deeply for their lives or security that they become refugees.

"The responsibilities of countries of origin are only now emerging from the distorted political perspectives of the Cold War"

The emphasis on state responsibility is not limited to countries of origin. External forces, states and institutions often play major roles in triggering and sustaining refugee flows. They are even more strongly implicated in the deeper root causes of displacement such as economic inequality and deprivation, militarization and internal factionalism. An acknowledgment of shared responsibility can form the basis of broadly based political efforts to resolve refugee problems.

The principle of no forcible return of refugees to places where their lives or freedom would be threatened is essential to protect people whose right to remain at home has been violated. *Non-refoulement* has always been, and remains, indispensable to international protection. It is expressed as an obligation of states in the 1951 Convention, and has gained universal recognition through regional refugee instruments and as a par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Despite broad acknowledgment of the principle, however, refugees continue to be refused entry or forcibly expelled, sometimes in very large numbers and to situations of grave danger.

The new emphases on prevention, repatriation and the responsibilities of states of origin do not in any way detract from this cor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Prevention is not prevention of movement but prevention of compulsion to move; repatriation of refugees must be voluntary and should not be encouraged until it is safe for them to go back. No country should act in a way that compels its people to flee but, in an imperfect world, the right not to be sent back is a crucial safeguard of life and liberty. Without it, there can be no meaningful internationai protection.

The responsibilities of asylum countries are well-established, even if they need to be constantly reaffirmed. The responsibilities of potential countries of origin, however, are only now emerging from the distorted political perspectives of the Cold-War period. The causes of refugee movements must now be urgently addressed in order to preserve the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 which could otherwise be overwhelmed, if only by the sheer numbers of claimants.

The conclusions now being reached seem self-evident in the cold light of current crises: the protection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offer to refugees is not an adequate substitute for the protection that they should receive from their own governments in their own countries. The generosity of asylum countries cannot fully replace the loss of a homeland or relieve the pain of exile. In this time of heightened tensions between peoples within states, displacement is in too many cases not a by-product of aggression but one of its fundamental aims. Making sure that human rights are respected where people live so that they do not have to flee to find protection is a matter of the greatest urgency.

Annex II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Their Significance

Annex II.1

The Statute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14 December 1950 as Annex to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28 (V).

Article 1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cting under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assume the function of providing international protec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to refugees who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present Statute and of seeking permanent solutions for the problem of refugees by assisting Governments and,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Governments concerned, private organizations to facilitate the voluntary repatriation of such refugees, or their assimilation within new national communities.

Article 2

The work of the High Commissioner shall be of an entirely non-political character; it shall be humanitarian and social and shall relate, as a rule, to groups and categories of refugees....

Annex II.2
The 1951 Convention and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he Convention wa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tus of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at Geneva from 2-25 July 1951 and entered into force on 22 April 1954.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wa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on 16 December 1966 and came into force on 4 October 1967.

The Convention and the Protocol are the main international instruments that regulate the conduct of States in matters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refugees. While the Convention does not create a right of asylum, it is important for the legal protection of refugees and the definition of their status. It attempts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de of rights for refugees on a general basis. It embodies principles that promote and safeguard their rights in the fields of employment, education, residence, freedom of movement, access to courts, naturalization and above all the security against return to a country where they may risk persecution.

The importance of the 1967 Protocol lies in the fact that it extends the scope of the 1951 Convention by removing the dateline of 1 January 1951 contained in the definition of the term refugee in Article 1 A(2), thus making the Convention applicable to people who become refugees after *that date. The 1967 Protocol also provides that the Protocol be applied by States Parties without any geographic limitation. However if States have opted, when acceding to the 1951 Convention, to limit its application to events occurring in Europe [Article 1B(1)(a)], that limitation also applies to the 1967 Protocol.*

Article 1 – Definition of the term "Refugee"
A(2) [Any person who]...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and is unable to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or who, not having a nationality and being outside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return to it. (as amended by Article 1(2) of the 1967 Protocol)

Article 33 – Prohibition of expulsion or return ("refoulement")
(1) No Contracting State shall expel or return ("refouler") a refugee in any manner whatsoever to the frontiers of territories where his life or freedom would be threatened on account of his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Annex II.3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dopted and proclaimed by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7 A (III) of 10 December 1948.

Article 9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detention or exile.

Article 13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and residence within the borders of each state.
(2) Everyone has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and to return to his country.

Article 14
(1) Everyone has the right to seek and enjoy in other countries asylum from persecution.

Article 15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nationality.
(2)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nationality nor denied the right to change his nationality.

Annex II.4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The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ere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and opened for signature in December 1966. Both Covenants entered into force in early 1976.

The United Nations has se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 some 70 covenants, conventions and treaties. The two International Covenants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e among the UN treaties that impose legally binding obligations on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rights of people under their jurisdiction.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2
(1)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to respect and to ensure to all individuals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ction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Article 12
(1) Everyone lawfully within the territory of a State shall, within that territory, have the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and freedom to choose his residence.
(2) Everyone shall be free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3) The above-mentioned right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strictions except those which are provided by law, are necessary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dre public)*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are consistent with the other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ant.
(4)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the right to enter his own country.

Article 13
An alien lawfully i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be expelled therefrom only in pursuance of a decision reached in accordance with law and shall, except where compelling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otherwise require, be allowed to submit the reasons against his expulsion and to have his case reviewed by, and be represented for the purpose before, the competent authority or a person or persons especially design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nnex II.5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pproved by consensus by the UN General Assembly on 10 December 1984 as Annex to GA resolution 39/46.

The Convention extends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nd non-extradition to any State.

Article 3
(1) No State Party shall expel, return ("*refouler*") or extradite a person to another State where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to torture.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ere are such grounds,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considerations including, where applicable, the existence in the State concerned of 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flagrant or ma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nex II.6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dopted by the 18th Assembly of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 on 27 June 1981 at Nairobi.

Article 12
(3) Every individual shall have the right, when persecuted, to seek and obtain asylum in other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ose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Annex II.7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Adopted by the Assembly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at its 6th Ordinary Session, Addis Ababa, 10 September 1969.

The OAU Convention adopts a broader definition of the term "refugee" than the internationally accepted definition found in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t does not include any temporal or geographical limitations, nor any reference to earlier categories of refugees. The OAU Convention also regulates the question of asylum. In addition, it unambiguously stipulates that repatriation must be a voluntary act.

Article I – Definition of the term "Refugee"

1. [Definition as in Article 1 A (2) of the 1951 Convention]

2. The term "refugee" shall also apply to every person who, owing to external aggression, occupation, foreign domination or events seriously disturbing public order in either part or the whole of his country of origin or nationality, is compelled to leave his place of habitual residence in order to seek refuge in another place outside his country of origin or nationality.

Article II – Asylum

1. Member States of the OAU shall use their best endeavours consistent with their respective legislations to receive refugees and to secure the settlement of those refugees who, for well-founded reasons, are unable or unwilling to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or nationality.

3. No person shall be subjected by a Member State to measures such as rejection at the frontier, return or expulsion, which would compel him to return to or remain in a territory where his life, physical integrity or liberty would be threatened for the reasons set out in Article I, paragraphs 1 and 2.

Article V – Voluntary Repatriation

1. The essentially voluntary character of repatriation shall be respected in all cases and no refugee shall be repatriated against his will.

Article VIII – Co-operation with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1. Member States shall co-operate with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nex II.8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Pact of San José, Costa Rica"

Signed on 22 November 1969 at the Inter-American Specialized Conference on Human Rights, held at San José, Costa Rica.

Article 22

(2)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freely, including his own.

(5) No one can be expelled from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or be deprived of the right to enter it.

(7)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seek and be granted asylum in a foreign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the state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in the event he is being pursued for political offenses or related common crimes.

(8) In no case may an alien be deported or returned to a country,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it is his country of origin, if in that country his right to life or personal freedom is in danger of being violated because of his race, nationality, religion, social status or political opinion.

Annex II.9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Adopted at the Colloquium, entitled "Coloquio Sobre la Protección Internacional de los Refugiados en América Central, México y Panamá: Problemas Jurídicos y Humanitarios" held from 19 – 22 November 1984 Cartagena, Colombia.

In 1984, experts and representatives from ten governments met at a Colloquium in Cartagena, Colombia, to search for solutions to the acute refugee problems in the region. The Colloquium subsequently adopted the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The Declaration seeks, inter alia, *to promote the adoption of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hat facilitate the application of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t emphasizes that repatriation of refugees must be voluntary, and embodies principles for their protection, assistance and reintegration.*

Like the OAU Convention (see 7 above), the Cartagena Declaration broadens the definition of the term "refugee" found in the 1951 Convention. Although a non-binding instrument, the Declaration has been accepted and is being applied by the Latin American States to the degree that it has entered the domain of international law.

Conclusion 3

To reiterate that, in view of the experience gained from the massive flows of refugees in the Central American are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nlarging the concept of a refugee, bearing in mind, as far as appropriate and in the light of the situation prevailing in the region, the precedent of the OAU Convention (article 1, paragraph 2) and the doctrine employed in the reports of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Hence the definition or concept of a refugee to be recommended for use in the region is one which, in addition to containing the elements of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includes among refugees persons who have fled their country because their lives, safety or freedom have been threatened by generalized violence, foreign aggression, internal conflicts, massive violation of human rights or other circumstances which have seriously disturbed public order.

Annex II.10
Convention Determining the State Responsible for examining Applications for Asylum lodged in one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igned by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t Dublin on 15 June 1990.

The treaty, known as the Dublin Convention, was signed as one of the collective measures taken by Member States towards the realization of a single market and the elimination of controls at internal Community borders.

In its preamble, the signatories to the Dublin Convention express their determination to guarantee adequate protection to refugees in keeping with their common humanitarian tradition. The Dublin Convention also contains an expression of the signatories' awareness of the need to take measures to avoid leaving applicants for asylum in doubt for too long as regards the likely outcome of their applications. The signatories also state their concern to provide all applicants for asylum with a guarantee that their applications will be examined by one of the Member States and to ensure that applicants for asylum are not referred successively from one Member State to another.

In accordance with these objectives, the Dublin Convention sets rules for determining the State responsible for examining applications for asylum. The Dublin Convention also elaborates the circumstances and the conditions which govern the transfer or re-admission of applicants between Member States. It provides, moreover, for the mutual exchange between Member States of general information and of information on individual cases. A number of safeguards are included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Article 2 of the Dublin Convention,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reaffirm their obligations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with no geographic restriction of the scope of these instruments, and restate their commitment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in applying them.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전 문

체약국은,

국제연합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세계인권선언이 인간은 차별없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수차에 걸쳐 난민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또한 난민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가능한 한 광범위한 행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였음을 고려하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종전의 국제협정들을 개정하고 통합하고, 또한 그러한 문서의 적용범위와 그러한 문서에서 정하여진 보호를 새로운 협정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며,

난민에 대한 비호의 부여가 특정 국가에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국제적 범위와 성격을 가진다고 국제연합이 인정하는 문제에 관한 만족할 만한 해결은 국제협력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며,

모든 국가가 난민문제의 사회적, 인도적 성격을 인식하고, 이 문제가 국가간의 긴장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며,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이 난민의 보호에 관하여 정하는 국제협약의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또한 각국과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과의 협력에 의하여 난민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의 효과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난민"이라는 용어의 정의

A. 이 협약의 적용상, "난민"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1) 1926년 5월 12일 및 1928년 6월 30일의 약정 또는 1933년 10월 28일 및 1938년 2월 10일의 협약,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또는 국제난민기구헌장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 국제난민기구가 그 활동기간중에 행한 부적격 결정은 당해자가 (2)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당해자가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195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

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의 경우에, "국적국"이라 함은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말하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기초한 정당한 이유없이 어느 하나의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당해자에게 국적국의 보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B. (1) 이 협약의 적용상 제1조 A의 "195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a) "1951년 1월 1일 전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b) "1951년 1월 1일 전에 유럽 또는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각 체약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기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언을 행한다.

(2) (a) 규정을 적용할 것을 선택한 체약국은 언제든지 (b) 규정을 적용할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그 의무를 확대할 수 있다.

C. 이 협약은 A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종지된다.

(1) 임의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또는

(2) 국적을 상실한 후 임의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또는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고, 또한 새로운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4)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 공포때문에 정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밖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그 국가에서 임의로 다시 정주하게 된 경우, 또는

(5) 난민으로 인정되어온 근거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이 조항은 이 조 A(1)에 해당하는 난민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한 이유로서 과거의 박해에 기인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국적이 없는 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어온 근거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상주 국가에 되돌아올 수 있을 경우. 다만, 이 조항은 이 조 A(1)에 해당하는 난민으로서 종전의 상주국가에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유로서 과거의 박해에 기인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D. 이 협약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외에 국제연합의 기관이나 또는 기구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종지되는 경우 그 자는 그 사실에 의하여 이 협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익을 받을 자격이 있다.

E. 이 협약은 거주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는 데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F.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는 국제문서에 정하여진 그러한 범죄를 범한 자.

(b)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

(c)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행한자.

제 2 조
일반적의무

모든 난민은 자신이 체재하는 국가에 대하여 특히 그 국가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 및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제 3 조
무 차 별

체약국은 난민에게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없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종 교

체약국은 그 영역안의 난민에게 종교를 실천하는 자유 및 자녀의 종교적 교육에 관한 자유에 대하여 적어도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호의적 대우를 부여한다.

제 5 조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부여되는 권리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난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6 조

"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

이 협약의 적용상, "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는, 그 성격상 난민이 충족시킬 수 없는 요건을 제외하고, 특정 개인이 그가 난민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특정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체재 또는 거주의 기간과 조건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이 협약이 더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2. 모든 난민은 어떠한 체약국의 영역안에서 3년간 거주한 후 그 체약국의 영역안에서 입법상의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받는다.

3. 각 체약국은 자국에 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에 상호주의의 적용없이 난민에게 이미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그 권리와 이익을 계속 부여한다.

4. 체약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이익 외의 권리와 이익을 상호주의의 적용없이 난민에게 부여할 가능성과 제2항에 규정하는 거주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난민과 제3항에 규정하는 권리와 이익이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 난민에게도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협약의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하는 권리와 이익 및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권리와 이익에 관하여서도 적용한다.

제 8 조

예외적 조치의 면제

체약국은 특정한 외국 국민의 신체,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취하여지는 예외적 조치에 관하여, 형식상 당해 외국의 국민인 난민에 대하여 단순히 그의 국적만을 이유로 그 조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상 이 조에 명시된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체약국은 적당한 경우 그러한 난민을 위하여 그 예외적 조치를 한다.

제 9 조

잠 정 조 치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전시 또는 기타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처하여, 특정 개인에 관하여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조치는 특정 개인이 사실상 난민인가의 여부, 또는 그 특정 개인에 관하여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를 체약국이 결정할 때까지에 한한다.

제 10 조
거주의 계속

1. 제2차 세계대전중에 강제로 퇴거되어 어느 체약국의 영역으로 이동되어서 그 영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은 그러한 강제체류기간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2. 난민이 제2차 세계대전중에 어느 체약국의 영역으로부터 강제로 퇴거되었다가 이 협약의 발효일 이전에 거주를 위하여 그 영역안으로 귀환한 경우 그러한 강제퇴거 전후의 거주기간은 계속적인 거주가 요건이 되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된 하나의 기간으로 본다.

제 11 조
난 민 선 원

체약국은 자국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으로서 정규적으로 근무중인 난민에 관하여서는 자국의 영역에서 정주하는 것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타국에서의 정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 2 장
법 적 지 위

제 12 조
개 인 적 지 위

1. 난민의 개인적 지위는 주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난민이 이미 취득한 권리로서 개인적 지위에 따르는 것, 특히 혼인에 따르는 권리는 난민이 체약국의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이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체약국에 의하여 존중된다. 다만, 문제의 권리는 난민이 난민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도 그 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제 13 조
동산 및 부동산

체약국은 난민에게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과 이에 관한 기타 권리의 취득 및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및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 14 조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난민은 발명, 의장, 상표, 상호 등의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문학적, 예술적 및 학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관하여, 상주거소를 가지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기타 체약국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 난민의 상주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국민에게 그 체약국의 영역에서 부여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제 15 조

결사의 권리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단체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 16 조

재판을 받을 권리

1. 난민은 모든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유로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난민은 상주거소를 가지는 체약국에서 법률구조와 소송비용의 담

보면제를 포함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그 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3. 난민은 상주거소를 가지는 체약국외의 체약국에서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상주거소를 가지는 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제 3 장
유 급 직 업

제 17 조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체약국이 국내 노동시장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고용에 관하여 취하는 제한적 조치는 그 체약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에 이미 그 조치로부터 면제된 난민이나, 또는 다음의 조건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난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그 체약국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b)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는 자

난민이 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이익을 원용하지 못한다.

(c)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1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가진 자.

3. 체약국은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관하여 모든 난민, 특히 근로자모집계획 또는 이주민계획에 따라 그 영역안에 입국한 난민의 권리를 자국민의 권리와 동일하게 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 18 조
자 영 업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있는 난민에게 독립하여 농업, 공업, 수공업 및 상업에 종사하는 권리 및 상업상, 산업상 회사를 설립할 권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 19 조
자 유 업

1. 각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으로서 그

체약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자격증서를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체약국은 본토 지역외에 자국이 국제관계에서 책임을 가지는 영역안에서 상기한 난민이 정주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 4 장
복 지

제 20 조
배 급

공급이 부족한 물자의 분배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주민전체에 적용되는 배급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난민은 그 배급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내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제 21 조
주 거

체약국은 주거에 관한 사항이 법령의 규제를 받거나 또는 공공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

민에게 주거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 22 조
공 공 교 육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외의 교육, 특히 수학의 기회, 학업에 관한 증명서, 자격증서 및 학위로서 외국에서 수여된 것의 승인,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감면 및 장학금의 급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 23 조
공 공 구 제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공공구제와 공적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 24 조
노동법제와 사회보장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a) 보수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수당을 포함한 보수,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유급휴가, 가내근로에 관한 제한, 최저고용연령, 견습과 훈련,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 및 단체교섭의 이익향유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규율을 받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것

(b) 사회보장(산업재해, 직업병, 출산, 질병, 폐질, 노령, 사망, 실업, 가족부양 기타 국내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급부사유에 관한 법규)

다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i) 취득한 권리와 취득과정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ii)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내법령이 공공자금에서 전액 지급되는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또한 통상의 연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기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정하는 것.

2.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에서 기인하는 난민의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의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체약국의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체약국은 취득되었거나 또는 취득의 과정중에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의 유지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간에 이미 체결한 협정 또는 장차 체결할 문제의 협정의 서명국의 국민에게 적용된 조건을 난민이 충족시키고 있는 한 그 협정에 의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그 난민에게 부여한다.

4. 체약국은 상기한 체약국과 비체약국간에 현재 유효하거나 장래 유효하게 될 유사한 협정에 의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가능한 한 난민에게 부여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 5 장
행정적조치

제 25 조
행정적원조

1. 난민이 그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외국기관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기관의 원조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은 자국의 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의하여 그러한 원조가 난민에게 부여되도록 조치한다.

2. 제1항에서 말하는 자국의 기관 또는 국제기관은 난민에게 외국인이 통상적으로 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또는 이를 통하여 발급

받는 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그 감독하에 이들 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다.

3. 상기와 같이 발급된 문서 또는 증명서는 외국인이 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또는 이를 통하여 발급받은 공문서에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반증이 없는 한 신빙성을 가진다.

4. 궁핍한 자에 대한 예외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조에 규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수료는 타당하고 또한 동종의 사무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징수하는 수수료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7조 및 제28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이동의 자유

각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있는 난민에게 그 난민이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및 그 체약국의 영역안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 27 조

신분증명서

체약국은 그 영역안에 있는 난민으로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28 조

여행증명서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역밖으로의 여행을 위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여행증명서에 관하여서는 이 협정 부속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체약국은 그 영역안에 있는 다른 난민에게도 이러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또한 체약국은 특히 그 영역안에 있는 난민으로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이러한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2. 종전의 국제협정의 체약국이 국제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난민에게 발급한 여행증명서는 이 협약의 체약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이 조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취급된다.

제 29 조

재정상의 부과금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유사한 상태에 있는 자국민에게 과하고 있거나 또는 과하여질 조세 기타 공과금(명칭여하를 불문한다)이외의 공과금을 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조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유사한 상태에 있는 자국민에게 과하는 금액보다도 고액의 것을 과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규정은 행정기관이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포함한 문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법령을 난민에게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자산의 이전

1. 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난민이 그 영역안으로 반입한 자산을 정주하기 위하여 입국허가를 받은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체약국은 난민이 입국 허가된 타국에서 정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에 대하여 그 소재지를 불문하고 그 난민으로부터 그 자산의 이전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 31 조

피난국에 불법으로 있는 난민

1. 체약국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 위협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으로서 허가없이 그 영역에 입국하거나 또는 그 영역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없이 당국에 출두하고 또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체약국은 상기한 난민의 이동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외의 제한을 과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제한은 그 난민의 체약국에 있어서의 체재가 합법적인 것이 될때까지 또는 그 난민이 타국에의 입국허가를 획득할 때까지만 적용된다. 체약국은 그러한 난민에게 타국에의 입국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를 부여한다.

제 32 조

추 방

1.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그 영역에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러한 난민의 추방은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진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증거를 제출하고, 또한 권한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이 특별히 지명하는 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목적을 위한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 인정된다.

3. 체약국은 상기 난민에게 타국가에의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구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부여한다. 체약국은 그 기간동안 동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 33 조

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체약국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는 이 규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 34 조

귀 화

체약국은 난민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한 장려한다. 체약국은 특히 귀화 절차를 신속히 행하기 위하여 또한 이러한 절차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을 가능한 한 경감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 6 장
실시 및 경과규정

제 35 조

국내당국과 국제연합과의 협력

1. 체약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국 또는 그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의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이들 기관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감독하는 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2. 체약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국 또는 그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이 국제연합의 관할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적당한 양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a) 난민의 상태

(b) 이 협약의 실시상황

(c) 난민에 관한 현행법령 및 장차 시행될 법령

제 36 조

국내법령에 관한 정보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법령을 송부한다.

제 37 조

종전의 협약과의 관계

이 협약의 제28조 제2항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은 체약국 사이에서 1922년 7월5일, 1924년 5월31일, 1926년 5월12일, 1928년 6월30일 및 1935년 7월30일의 협약, 1933년 10월28일 및 1938년 2월 10일의 협약, 1939년 9월14일의 의정서 및 1946년10월15일의 협약을 대신한다.

제 7 장
최 종 조 항

제 38 조
분쟁의 해결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협약 당사국간의 분쟁으로서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분쟁당사국중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

제 39 조
서명, 비준 및 가입

1. 이 협약은 1951년 7월 28일에 제네바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 협약은 1951년 7월 28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 국제연합 구주사무국에서, 동년 9월17일부터 1952년 12월 31일까지 국제연합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다시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난민 및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전권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국가 또는 총회에 의하여 서명하도록 초청받은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고,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본조 제2항에 언급된 국가들의 가입을 위해 1951년7월28일부터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40 조
적용지역조항

1. 어떠한 국가도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자국이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이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2. 그후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언제든지 통고함으로써 그러한 적용을 행하고 또한 그 적용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90일후 또는 그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의 양자중 늦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관계국가는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영역에 관하여 이 협약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헌법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그러한 영역의 정부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 41 조

연 방 조 항

체약국이 연방제 또는 비단일제 국가인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a) 이 협약의 규정으로서 그 실시가 연방의 입법기관의 입법권의 범위안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연방정부의 의무는 연방제국가가 아닌 체약국의 의무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b) 이 협약의 규정으로서 그 실시가 연방구성국, 주 또는 현의 입법권의 범위안에 속하고 또한 연방의 헌법제도상 구성국, 주 또는 현이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것에 관하여서는 연방정부는 구성국, 주 또는 현의 적당한 기관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호의적인 권고와 함께 그 규정을 통보한다.

(c) 이 협약의 체약국인 연방제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협약의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약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연방과 그 구성단위의 법령 및 관행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고, 또한 입법 기타의 조치에 의하여 이 협약의 규정이 실시되고 있는 정도를 보여준다.

제 42 조

유 보

1. 어떠한 국가도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의 제 1 조, 제 3 조, 제 4 조, 제 16 조 제 1 항, 제 33 조, 제 36 조 내지 제 46 조의 규정외에는 협약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유보할 수 있다.

2. 이 조 제 1 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당해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 43 조

발 효

1. 이 협약은 여섯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90일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여섯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90일후에 발효한다.

제 44 조

폐 기

1. 어떠한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이 협

약을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후에 당해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3. 제40조에 따라 선언 또는 통고를 행한 국가는 그후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상기한 영역에 이 협약의 적용을 종지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그 선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45 조
개 정

1. 어떠한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협약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총회는 상기 요청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권고한다.

제 46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제39조에 규정한 비회원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a) 제1조 B에 의한 선언 및 통고

(b) 제39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c) 제40조에 의한 선언 및 통고

(d) 제42조에 의한 유보 및 철회

(e) 제43조에 의한 이 협약의 발효일

(f) 제44조에 의한 폐기 및 통고

(g) 제45조에 의한 개정의 요청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오십일년 칠월 이십팔일 제네바에서 모두 정본인 영어, 불란서어로 본서 1통을 작성하였다. 본서는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되고, 그 인증등본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제39조에 규정된 비회원국에 송부된다.

부 속 서

제 1 항

1. 이 협약 제28조에 규정하는 여행증명서의 양식은 부록에 첨부된 견본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2. 증명서는 적어도 2개언어로 작성되고, 그중 하나의 언어는 영어 또는 불어로 한다.

제 2 항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국가의 규칙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는 양친의 어느 일방 또는 예외적인 경우 다른 성인 난민의 여행증명서에 병기할 수 있다.

제 3 항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자국민의 여권에 대한 수수료의 최저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항

특별한 경우 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명서는 가능한 한 다수의 국가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발급한다.

제 5 항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재량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제 6 항

1. 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은 그 증명서의 명의인이 합법적으로 타국의 영역안에 거주를 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명서의 발급기관이 있는 국가의 영역안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그 발급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2.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으로서 특히 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기관은 자국 정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체약국은 이미 그 영역안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난민으로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갱신, 연장 또는 새로운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 7 항

체약국은 이 협약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의 효

력을 인정한다.

제 8 항

난민이 가려고 희망하는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은 그의 입국을 인정할 용의가 있고 또한 사증이 필요한 경우에 그 난민이 소지한 증명서에 사증을 부여한다.

제 9 항

1. 체약국은 최종 목적지 영역의 사증을 취득한 난민에게 통과 사증을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2. 상기한 사증의 발급은 외국인에 대한 사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거부할 수 있다.

제 10 항

출국사증, 입국사증 또는 통과사증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의 여권에 사증을 부여하는 경우의 수수료의 최저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항

난민이 다른 체약국의 영역안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정한 경우에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하는 책임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에 있고, 그 난민은 그 기관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2 항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종전의 증명서를 회수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국에 반송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국에 이를 반송한다. 그와같은 기재가 없는 경우 그 발급기관은 회수한 증명서를 무효로 한다.

제 13 항

1. 각 체약국은 이 협약 제28조에 따라 발급한 여행증명서의 명의인에 대하여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언제라도 그 영역에 돌아오는 것을 허가할 것을 약속한다.

2. 체약국은 전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명서의 명의인에게 출입국에 관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체약국은 예외적인 경우 또는 난민의 체재가 일정기간에 한하여 허가된 경우 그 난민이 체약국의 영역에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3월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 14 항

제 13 항의 규정만을 예외로 하고, 이 부속서의 규정은 체약국의 영역에의 입국, 통과, 체재, 정주 및 출국에 관한 조건을 규율하는 법령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5 항

증명서의 발급 또는 이의 기재사항은 그 명의인의 지위 특히 국적을 결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6 항

증명서의 발급은 그 명의인에게 발급국의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에 의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결코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들 기관에 대하여 보호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부록 생략)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작성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 195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난민이 된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협약이 채택된 후 새로운 사태에 의하여 난민이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이들 난민은 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고려하며,

1951년 1월 1일 전이라는 제한에 관계없이 협약의 정의에 해당되는 모든 난민이 동등한 지위를 향유함이 바람직하다고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총 칙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이하에서 정의된 난민에 대하여 협약의 제 2 조에서 제 34 조까지를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의정서의 적용상, "난민"이라는 용어는, 이 조 제 3 항의 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협약 제 1 조 A(2)에서 "195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이라는 표

현과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서" 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경우 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3.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어떠한 지리적 제한도 없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로서 협약 제1조 B(1)(a)를 적용한다는 선언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선언은 동 조 B(2)에 따라 그 국가의 의무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 하에서도 적용된다.

제 2 조
국내당국과 국제연합과의 협력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국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기관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이들 기관이 이 의정서 규정의 적용을 감독하는 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에 편의를 제공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국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기관이 국제연합의 관할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적당한 양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a) 난민의 상태

(b) 이 의정서의 실시상황

(c) 난민에 관한 현행법령 및 장래 시행될 법령

제 3 조
국내법령에 관한 정보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의정서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법령을 송부한다.

제 4 조
분쟁의 해결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 의정서 당사국간의 분쟁으로서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분쟁당사국중 어느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

제 5 조
가 입

이 의정서는 협약의 모든 당사국과 이들 당사국외의 국가로서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이 의정서에 가입하도록 초청받은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6 조

연 방 조 항

연방제 또는 비단일제 국가인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a) 이 의정서의 제1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의 규정으로서 이들 규정의 실시가 연방의 입법기관의 입법권의 범위안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연방 정부의 의무는 연방제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의 의무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b) 이 의정서의 제1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의 규정으로서 이들 규정의 실시가 구성국, 주 또는 현의 입법권의 범위안에 속하고 또한 연방의 헌법제도상 구성국, 주 또는 현이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것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구성국, 주 또는 현의 적당한 기관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빠른시기에 호의적인 권고와 함께 그 규정을 통보한다.

(c)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 연방제 국가는, 이 의정서의 기타 당사국으로부터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제1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 규정의 실시에 관한 연방과 그 구성단위의 법령 및 관행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입법 기타의 조치에 의하여 이들 규정이 실시되고 있는 정도를 제시한다.

제 7 조

유보와 선언

1. 어떠한 국가도 이 의정서에 가입시 이 의정서 제4조에 관하여, 또한 협약의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조 제1항 및 제33조 규정을 제외하고 이 의정서의 제1조에 따를 협약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유보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행한 유보는 협약의 적용을 받는 난민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2. 협약 제42조에 따라 협약의 당사국이 협약에 대하여 행한 유보는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에 관하여서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당해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4.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가 협약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한 선언은, 가입시 당해당사국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반대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협약 제40조제2항과 제3항 및 제44조제3항의 규정은 이 의정서에 준용된다.

제 8 조

발 효

1. 이 의정서는 여섯번째의 가입서가 기탁된 날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여섯번째의 가입서가 기탁된 후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가입서가 기탁된 날에 발효한다.

제 9 조

폐 기

1. 이 의정서의 어떠한 당사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이 의정서를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후에 관계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 10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상기 제5조에 규정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발효일자, 가입, 유보, 유보의 철회, 폐기 및 이에 관계된 선언 및 통고를 통보한다.

제 11 조

국제연합 사무국 문서보존소에의 기탁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의 본서는, 국제연합 총회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 후 국제연합 사무국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사무총장은 그 인증등본을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상기 제5조에 규정하는 기타 국가들에게 송부한다.